

손로몬 X 판례

3월의 생환기

05. 로몬, 원칙을 확인하다!





영장에 휴대폰은
없었잖아요!

물려나세요.

영장에 정보처리
장치 및 정보저장
매체라고 적혀 있는
것 아까 봤잖소!

경찰이 영장에도
없는 걸 마음대로
막 가져가도 돼요?
돌려주세요!



휴대폰은 당연히
거기에 포함됩니다.
자꾸 막으면
공무집행방해
적용하겠습니다!



사자님, 저 두 사람을
설원재로 불러와 주세요.

허, 이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척척 찾아내는구나.

재촉하지 마라,
설원재로
불러줄 테니.

잠시 후

뭐, 뭐야.
여기가
어디지?

압수수색 하다
말고 꿈을 꾸고
있나. 내가.

어서오세요!

무슨 사건이든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는 법률상담소
설원재입니다!





두 분께 이 판례 내용을
알려드려야겠네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정신에 비추어,

(2024 모 2020)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압수할 물건이 **‘정보처리장치 및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로
적혀 있었는데, 스마트폰을 압수한
사건이었어요.

정보처리장치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정보저장매체



USB, 외장하드



스마트폰은, **정보처리와 정보저장**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스마트폰은
통신 매체입니다.
**개인의 통신과 사생활에 대한
방대한 정보**가 담겨있죠.

스마트폰을
압수하면 기본권을
더 크게 침해하게
됩니다.

이에 판례는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가 명시되어야
압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먹이 마르기 전, 3일
안에 5명을 구제했으니
약속대로 살려주마.



아!!!

감사합니다!!!



근데, 저승사자는
원래 망자를 데려가는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를 살려주시면
직무유기 아닌가요?

맞다. 망자를
호명하고
데려가지 못한
직무유기를
범했으니,

나는 더 이상
저승사자가 아닌
여덟 지옥 중
하나에서 일하게
될 거야.



그럼
설원재는요?



버려지겠지.



안돼요!
사자님이 벌받지 않을
방법이 없을까요?

저랑 같이
사람들 돕고, 좋은 일
하셨잖아요!

그런 생각 말고 다시
얻은 시간이나 네
바람대로 값지게 쓰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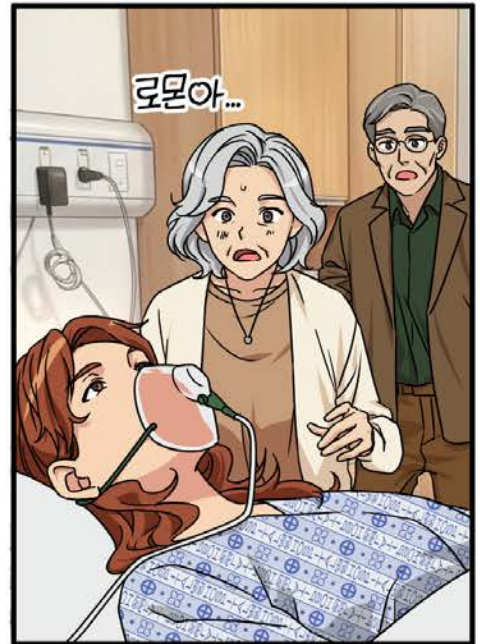




사자님!!!!

이렇게 헤어질 수 없어요!!!





로몬 아빠!
로몬이
깨어났어요.

의사 선생님
모시고 올게!

후다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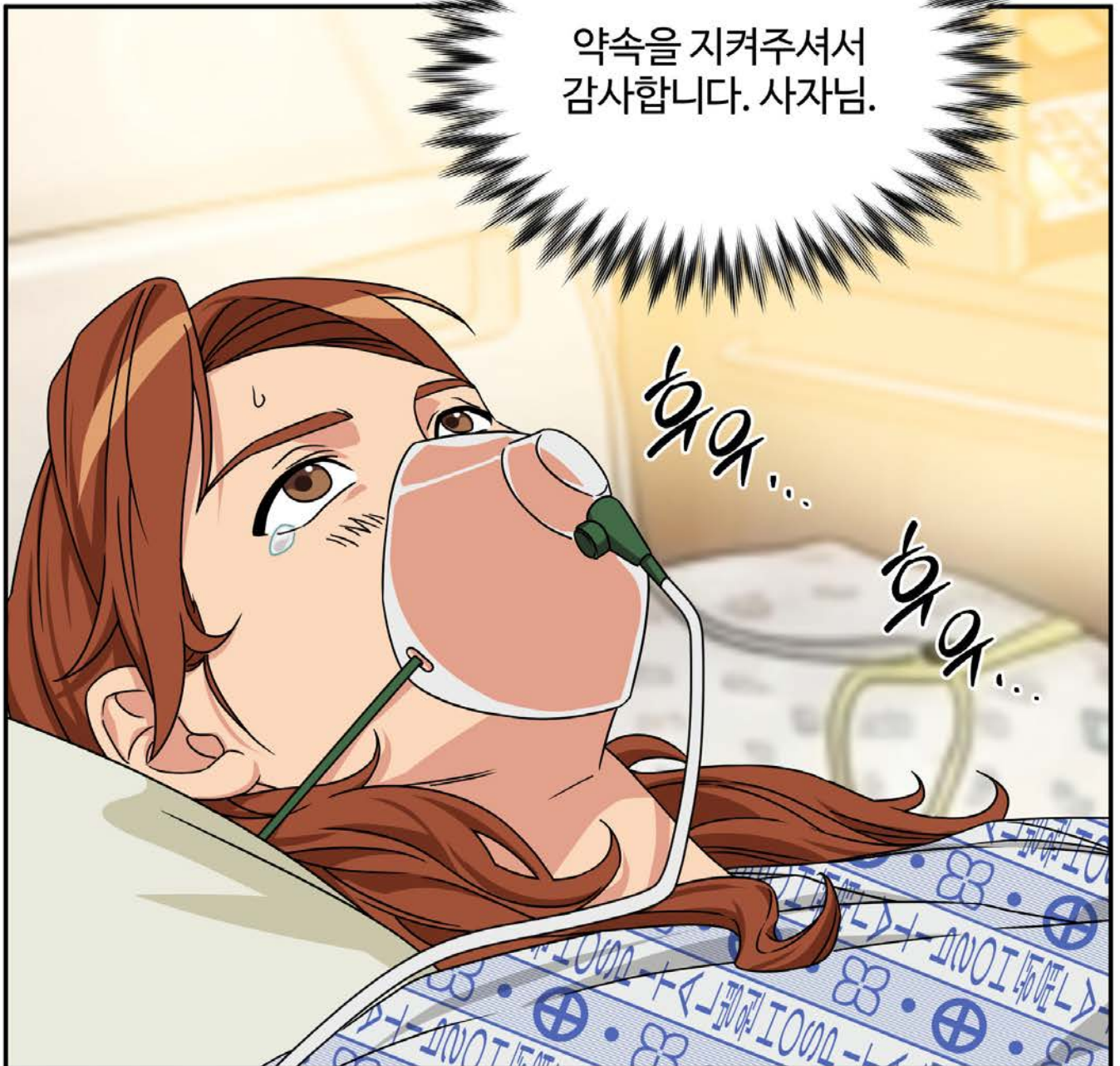
우리 로몬이
깨어났어요!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자님.

후후...

후후...



한달 후



손 판사, 오늘
점심은 기력 회복을
위해 보양식 먹으려...



...갈까 했는데...

깨울까요?



그냥 자게 두죠.
음식은 포장해
오는 게 좋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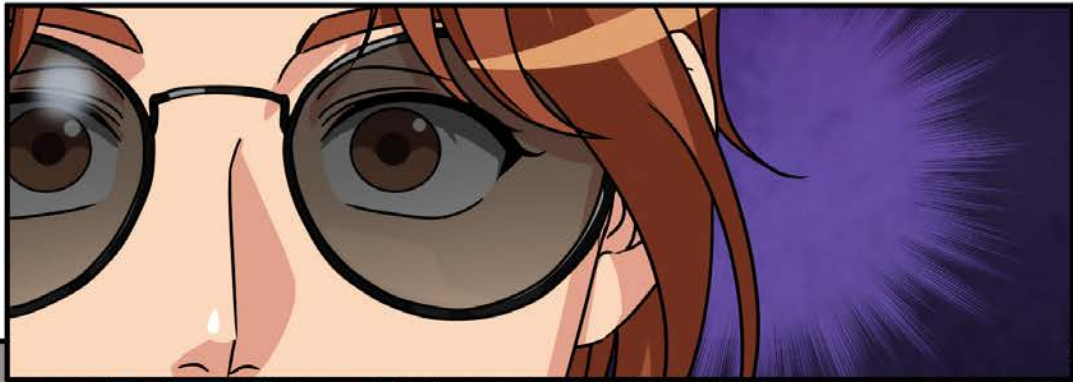




기면증이라니...
꽤 좋은 핑계를
찾았군.



혼수상태인 건
싫지만 사자님과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것도 멈출 수
없다고요.



저 사람이에요!

송침반도
저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



어서 오세요!
무슨 사건이든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는
법률상담소 설원재입니다!



- End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대법원 2024. 9. 25. 선고 2024모2020 결정



압수수색영장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례요약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휴대전화는 정보처리장치나 정보저장매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통신매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컴퓨터, 노트북 등 정보처리장치나 USB, 외장하드 등 정보저장매체와는 명확히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휴대전화, 특히 스마트폰에는 전화·문자메시지·SNS 등 통신, 개인 일정, 인터넷 검색기록, 전화번호, 위치정보 등 통신의 비밀이나 사생활에 관한 방대하고 광범위한 정보가 집적되어 있다. 이와 같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컴퓨터나 USB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와는 그 분량이나 내용, 성격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얻을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와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도 크게 다르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